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홍콩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HK-1000285**
신청인: 케세이퍼시픽에어웨이즈리미티드
피신청인 : 케블린 찬 (**Kevlin Chan**), 시몬 찬(**Simon Cha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케세이퍼시픽에어웨이즈리미티드

홍콩, 란타우, 홍콩국제공항, 8시닉로드, 케세이퍼시픽
시티, 노스타워

피신청인: 케블린 찬 (**Kevlin Chan**), 시몬 찬(**Simon Chan**)

홍콩, 란타우, 홍콩국제공항, 8시닉로드, 케세이퍼시픽
시티, 노스타워 5층

분쟁 도메인이름은 “cathaypacificairway.com”이며, 피신청인 명의로 Domainca.com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한국정보인증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0. 3. 4.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이하 '센터' 라고 함)에 피신청인을 '유나이티드유럽컨설팅'으로 표시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 3. 8.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0. 3. 9. 센터에 등록인이 '케블린 찬, 시몬 찬'이며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0.3.10. 신청인은 유나이티드유럽컨설팅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측으로 이전하였음을 센터에 통지하면서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를 추후 센터에 통지할 것이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절차 진행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2010. 3. 12. 센터는 절차 진행을 보류할 권한이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신청인에게 절차규칙 제12조의 화해 또는 절차의 종료 사유 및 절차규칙 제5조의 답변서 제출 기일 및 연장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2010. 3. 15. 센터는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을 취할 것인지 여부를 2010. 3. 16.까지 센터에 알려달라고 통지하였다.

2010. 3. 17. 센터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상 피신청인의 표시정정과 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이므로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2010. 3. 22.까지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2010. 3.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표시 정정과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보정된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을 이견 피신청인으로 표시하면서도 분쟁 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인 유나이티드유럽컨설팅이 실질적인 피신청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0. 3.23. 센터는 신청인에게 이 주장과 관련하여 센터는 피신청인의 적격에 관하여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조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나 직전 등록인에게도 분쟁조정신청서를 송달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2010. 3. 25.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과 직전 등록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일이 2010. 4. 14.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0. 4.16.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0. 4. 16.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남호현 위원으로부터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았다.

2010. 4. 20. 센터는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남호현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같은 날 당사자에게 조정부 구성통지와 함께 2010.5.4. 까지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2010.4.20.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조정부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고 2010. 4. 20. 조정부에게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정부는 2010. 4. 30.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스캔한 파일들은 파일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며 증거의 스캔한 파일은 모두 같은 내

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첨부물을 2010년 5월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 명령을 신청인에게 내리면서 이날까지 제대로 된 첨부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부는 제출된 첨부물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또는 보충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센터로부터 위 신청인의 보충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결정은 피신청인의 답변서 접수일 또는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경과한 때 중 빠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내려질 것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2010. 5. 4. 신청인으로부터 수정된 증거를 내용으로 하는 보충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보충서의 송달을 하면서 피신청인은 2010년 5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기일 내에 이 보충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의 증거 B, C, F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46년 9월 24일에 설립된 국제 항공사로서 36개 국가에 걸쳐 11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cathaypacific' 또는 'cathaypacific'을 포함하는 상표 · 서비스표를 '항공운수업'과 관련하여 홍콩, 대한민국 등 세계 각국에 다수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2010. 1.25. 분쟁 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고(신청인의 증거 H), 이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신청인의 증거 K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인 유나이티드유럽컨설팅은 신청인의 관계자로 보이는 피신청인으로 등록명의를 변경하였으나 등록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며 그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은 2005. 5.1.에 등록되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규정' 제4조 a항 (i), (ii), (ii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A. 당사자의 적격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이 그 등록명의를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지만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견 분쟁조정신청의 실질적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

인인 유나이티드유럽컨설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 보면 분쟁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로그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 아니할 뿐이고, 그 등록명의인은 피신청인이라는 사실을 등록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이상 분쟁도메인이름의 피신청인은 결정문에 표시된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B. 절차상의 언어

절차상의 언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절차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상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절차상의 언어는 등록약관의 언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등록기관이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이므로 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로 하기로 한다.

C. 본안에 관한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하에서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표, 서비스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동일, 유사 여부

분쟁 도메인이름에서 최상위도메인 .com과 항공운수업에 있어서 보통명칭 또는 성질 표시 부분에 해당하는 'airway'를 제외하면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 'cathaypacific'과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홍콩, 대한민국 등 세계 각지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 'cathaypacific'과 유사하므로 '규정' 제4조 a항 (i)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이 상표 'cathaypacific' 또는 'cathaypacificairways'에 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음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피신청인은 규정 4(c)에 따라 다음의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i) 분쟁조정신청 통지 이전에 선의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 또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이름을 피신청인이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기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한 경우;

(ii) 피신청인이 상표권이나 서비스표 등록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 또는

(iii) 피신청인이 어떠한 상업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이, 수요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상표 ·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합법적이며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인 유나이티드유럽컨설팅에게 'cathaypacific' 또는 'cathaypacificairways'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cathaypacific' 또는 'cathaypacificairways'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나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나 그 직전 등록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 등에 'cathaypacific' 또는 'cathaypacificairways'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규정' 제4조 a항 (ii)의 요건도 충족한다.

3)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는 '이곳은 당신의 항공 티켓 사이트로 통하는 인터넷 관문입니다. 정보를 둘러보고 한번 검색해보세요.'라고 하는 문구의 기재와 함께, 후원 사이트 목록을 나열하고 클릭만하면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은 항공 티켓 취급 여행사를 포함 신청인의 경쟁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 분쟁도메인이름의 직전 등록인이 신청인의 관계자로 보이는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그 접근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등록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자 등록비 명의를 금전을 요구하며 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서비스표의 항공 수요자에게 있어서의 국내외에서의 주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규정' 제4조 a항 (iii)d의
요건도 충족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이
규정 4조 a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
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
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cathaypacificairway.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남호현
1인 조정부

결정일: 2010년 5월 18일